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 선고 2019가단192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919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 선고 2019가단19268 판결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9. 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9. 2. 18. 체결된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12호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제4조 기재 5억 원 지급약정 중 40,943,237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43,2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최종 청구취지 기재 '2019. 2. 28.'은 '2019. 2. 18.'의 오타임이 분명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8. 7. 17. D에게 4,000만 원을 이자율 18.8%, 지연이율 연 21.8%, 기간 7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는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전56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5.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39,461,764원 및 그 중 37,429,457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8. 17. 확정되었다.

3) 2019. 8. 29. 기준 위 대출금 채권은 40,943,237원이 남아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협의이혼

1) D는 2019. 2. 18.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2019년 제12호로 다음 내용의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제4조의 위자료 5억 원 지급약정을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이라 한다).

제1조 D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민법 제836조 절차를 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4조 D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자녀 F, G 등의 향후 결혼비용, 피고의

치료비(현재 유방암 치료 중)를 고려하여 5억 원을 2019. 4. 30.까지 피

고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D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2) D와 피고는 2019. 4. 1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9. 5. 3. D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5425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5. 28.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169,879,125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다. D의 채무초과상태

D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서울교통공사장, 주식회사 H장, I은행장, 주식회사 J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D는 피고와 혼인하여 1989년 및 1998년 각 피고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2001. 3. 6. 이혼하였고, 다시 피고와 2013. 4. 19.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D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4. 1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② D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아왔고, 피고도 2013년부터 이혼할 때까지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하면서 보험모집원 등으로 맞벌이를 하고, 2013. 10.경 보험금 61,499,433원을 받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

③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9. 4. 17. 기준으로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적극재산은 144,513,722원(= 시가 188,000,000원 - 피담보채무 43,486,278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K건물,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D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1,740,320원이 있었고, 그 합계는 236,254,042원이다(피고는, D의 정년 퇴직일까지의 예상 수령 급여 198,480,757원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D가 장차 급여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급여를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④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9. 4. 17. 기준 D의 소극채무는 241,452,000원으로 위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D가 부담한 위 채무는 부부 및 자녀들의 생계유지 및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피고는, D의 주식투자 실패, 부정행위, 피고와 상의 없이 부담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D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D에게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자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D의 소극재산은 D의 단독채무로 하되, 추가로 D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을 한 것이고, 이는 포괄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분할대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혼인파탄에 D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재산분할약정 중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은 그 전체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보전채권인 40,943,2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943,2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범선윤